정치인의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 관련 금전, 물품, 관광, 음식물 등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 원**

선거법규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확인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선거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02) 503-11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가치

모두의 관심과 협조 속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4월 5일(금) ~ 6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4월 10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주요 선거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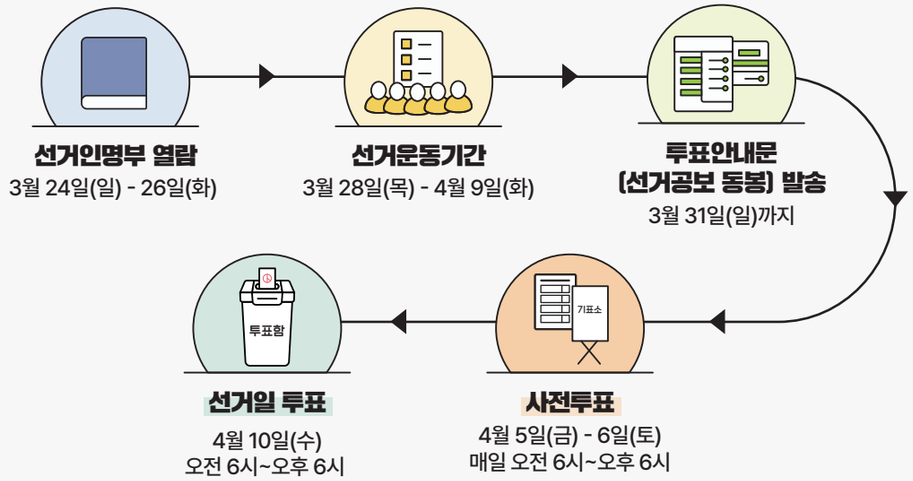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의 국민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

- **주민등록자** :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재외국민** :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3개월 미만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만 가능

투표용지 2장

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책·공약 바로 알고 투표

후보자 정보 확인
info.nec.go.kr

정책·공약 확인
policy.nec.go.kr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debates.go.kr

선거벽보 살펴보기

선거공보 살펴보기

유권자를 위한 투표편의 지원

- **중증장애인 등의 투표소 이동**을 돕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 등이 장착된 전용 차량 및 활동보조인 **무료 지원**
-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출입하기 어려운 투표소에 **임시기표소 운영**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직접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그 가족 (1인도 가능)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의 **도움** 받아 투표 가능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신체장애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 등은 **거소투표신고 후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가능
-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 수령 가능**
-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가능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사전투표

일시 : 4월 5일(금)~6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 가능

※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관내·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안내
※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지역의 선거인은 해당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관내선거인 사전투표절차

자신의 주소지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

* 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에 2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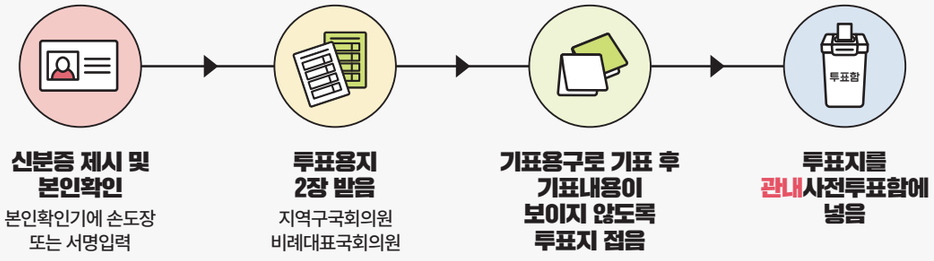

관외선거인 사전투표절차

관내선거인이 아닌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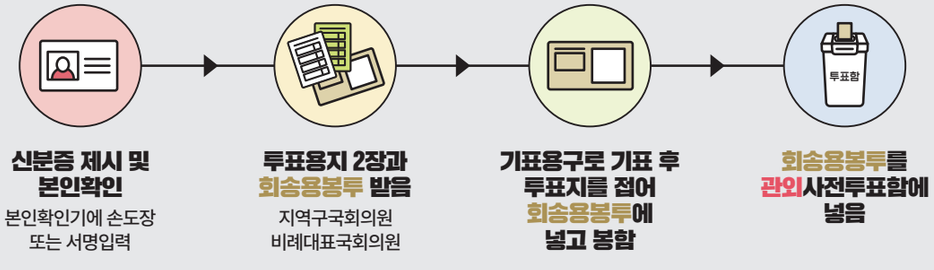

선거일 투표

일시 : 4월 10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장소 : 지정된 투표소
각 세대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선거일 투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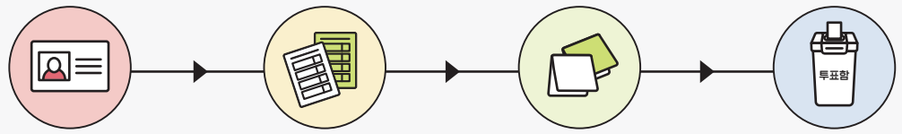

※ 재 · 보궐선거 동시 실시 지역의 선거인은 해당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투표 준비물

신분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청소년증,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위의 신분증 중에 모바일 신분증이 있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단,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사용불가)
※ 그 밖의 신분증은 구·시·군위원회로 문의

주의하세요!

1인 2표 : 선거마다 하나의 정당, 한 명의 후보자에게 각각 기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

※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유효표·무효표 예시

· 공직선거법 제 179조 (무효투표)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100조의2 (무효투표)

투표용지는 재발급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투표해야 합니다.

유효표

① 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① ① 표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장신오에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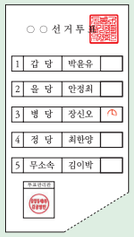

② ① 표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최한양에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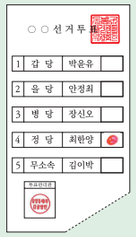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안정최에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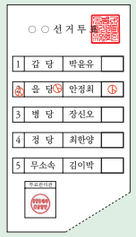

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 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①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박윤유에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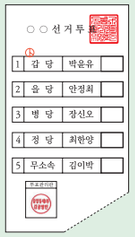

②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최한양에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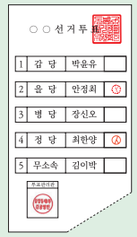

무효표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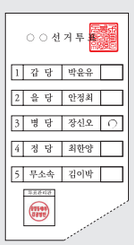

※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①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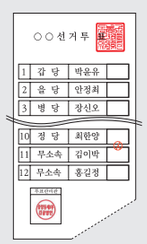

②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개 이상의 ① 표를 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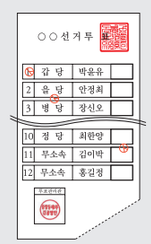

① 표를 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① ① 표를 하고 문자(좋다, 나쁘다, 공명선거 등) 또는 물형(○,□,V,X,△ 등)을 기입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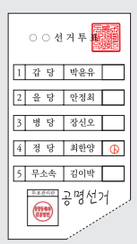

② ① 표를 하고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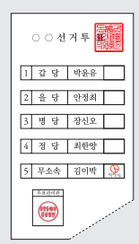

수많은 땀방울이 모여 지켜지는 **소중한 권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